

의안번호	2218484
의 퇴 인	안철수 의원
회 답 일	2026. 3. 13.
추계번호	26F13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년간 총 1,340.5억 원(연평균 67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8년까지 발생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2027~2028년

(단위: 억 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노인복지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적용기한 2년 연장(제20조)	641.6	698.9	1,340.5	670.3
합계	641.6	698.9	1,340.5	670.3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개정안) 2028.12.31.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6년 중 통과될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
 - (취득세)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등 이내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에 대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기 등을 준용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
- 향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4)간 감면액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감면액 연평균 증감율 : 취득세 8.2%, 재산세 13.3%, 지역자원시설세 0.0%

3. 상세 추계내역

가.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 연장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같은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총 7개
 - － 상기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6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

[표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

조항	감면대상	세목	감면율	최저한세 ¹⁾	비고
제1호	·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100%	85%	
		재산세	50%	—	
	· 무료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100%	85%	
		지역자원시설세	100%	—	
제2호	·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25%	—	
		재산세	25%	—	

주: 1)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에 대하여 감면 특례 제한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6. 12. 31. → (개정안) 2028. 12. 31.

□ (감면실적)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액은 2021년 특이치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승 추세

○ 2015년 이후 지방세 감면율의 변화는 없으며, 2024.12.31.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 신설

[표 3]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 2020~2024년

(단위: 억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감율
취득세	346.4	523.1	414.1	403.9	432.1	8.2
재산세	42.0	49.8	50.6	56.8	64.3	13.3
지역자원시설세	0.7	0.8	0.8	0.7	5.9	0.0
합계	389.1	573.7 (47.0)	465.5 (△19.0)	461.4 (△1.0)	502.3 (9.0)	

주: 1) ()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의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 각 연도

나.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

□ (추계방법) 향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4)간 감면액 연평균 증감율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따른 최근 5년('20~'24)간 노인복지시설 현황의 연평균 증감율은 4.2%로 상승하는 추세

[표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0~2024년

(단위: 개소,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감율
제1호	노인주거복지시설	352	337	308	297	281	
	노인의료복지시설	5,725	5,821	6,069	6,139	6,195	
	노인여가복지시설	69,005	68,823	69,786	70,455	70,935	
	경로당	67,316	67,211	68,180	68,792	69,260	
	재가노인복지시설	7,212	9,984	13,272	15,896	18,745	
	노인보호전문기관	35	37	37	38	39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96	206	206	211	215	
제2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9	20	20	20	20	4.2
합계		82,544	85,228 (3.3)	89,698 (5.2)	93,056 (3.7)	96,430 (3.6)	

주: 1) ()안은 노인복지시설 현황의 전년대비 증감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 연도

- (감면액 연평균 증감율) 향후 지방세 감면 세수효과는 최근 5년('20~'24)간 감면액 연평균 증감율 취득세 8.2%, 재산세 13.3%, 지역자원시설세 0.0%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취득세) 2021년 특이치를 제외한 연평균 증감율은 8.2%로 상승하는 추세
- (재산세) 연평균 증감율은 13.3%로 상승하는 추세
- (지역자원시설세) 2024년 특이치를 제외한 연평균 증감율은 0.0%로 변화가 미미

- (추계결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 지방세 세수는 2년간 총 1,340.5억 원(연평균 670.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 세수효과는 2027~2028년까지 발생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2027~2028년

(단위: 억 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노인복지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적용기한 2년 연장(제20조)	641.6	698.9	1,340.5	670.3
합계	641.6	698.9	1,340.5	670.3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수인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수인	02-6788-4839	suin2025@assembly.go.kr